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479

JCCT 2021-11-59

감사인 지정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uditor Designation System

김예경*, 홍효석**

Ye-Kyoung Kim*, Hyo Seog Hong**

요약 본 연구는 회계 및 감사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회계 개혁의 일환으로 '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8년 1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시행되었으며 '24 사업연도부터 모든 개정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8년에는 699개사가 지정되어 전년대비 153개사, 28.02%(상장회사는 114개사, 67.06%) 증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가 정해진 '19년에는 1,224개사로 전년대비 525개사, 75.11% (상장회사는 523개사, 184.15%)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년에는 1,521개사가 지정되어 전년대비 297개사, 24.26%(상장회사는 253개사, 31.35%)가 증가되었다. 감사인 지정 사유는 '19년에는 상장예정법인 331개사, 주기적지정 220개사, 3년연속 영업손실등 197개사, 관리종목 112개사, 부채비율 과다 108개사, 감사인미선임 66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지정회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사유는 개정 외부감사법의 신규 지정기준에 따라 475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상장예정법인 간주지정제도 폐지에 따라 114개사 증가, 관리종목 편입상장사 증가에 따라 90개사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20년에는 주기적 지정은 462개사로 (상장회사 434개사, 비상장회사 28개사) 전년(220개사)대비 (242개사, 110%)가 증가하였으며, 직권지정은 상장예정법인이 362개사로 가장 많고, 3년연속 영업손실등 245개사, 관리종목 133개사,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등의 순으로 지정되었다. 회계법인별 감사인 지정은 '20년도에는 4대회계법인이 (삼일, 삼정, 한영, 안진)이 속한 가군은 526개사(34.6%)로 전년(454개사, 37.1) 대비 72사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2.5%p 감소하였다.

주요어 : 외부감사법, 감사인 지정제도, 직권지정, 주기적 지정

Abstract As a part of Korean accounting reform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accounting and audit related systems, the amendment bill of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s was passed in the Natinal Assembly plenary session in 2017, the amended act has been enforced except some regulations since the business year on November 1, 2018, and all the amended matters will be applied from the business year of 2024. The reasons for auditor designation in 2019 are 'pre-IPO' 331 companies, 220 periodic designation companies, 197 companies that had operating loss for three consecutive years, 112 companies with issues for administration, 108 companies with excessive debt ratio and 66 companies with no auditors. Regarding the reasons for the increase of auditor designation, 475 companies were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the new designation standard by the amended bill of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114 companies were increased due to the abolition of the considered designation system of companies to be listed, and 90 companies were increased based on the increase of listed companies incorporated to issues for administration. In 2020, 462 companies had periodical designation (434 listed, 28 non-listed), adding 242 companies (110%) over a year. In terms of direct designation, 'pre-IPO' accounted for the most (362 companies), followed by '3 consecutive years of operating loss' (245 companies), then by companies with administration issues (133 companies), and CEO & largest sharholder replacement.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auditors according to accounting firms in 2020, A group that includes(top 4) accounting firms(Samil, Samjeong, Hanyeong, Anjin) had 526 companies(34.6%), which ia an incese of 72 companies from the previous year(454 companies, 37.1%), but the weight decreased by 2.5%.

Key words : External Audit Law, Auditors Designation System, Direct Designation, Periodic Designation

*정희원,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회계학과 교수 (제1저자) Received: October 14, 2021 / Revised: October 25, 2021

**정희원,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회계학과 교수 (교신저자) Accepted: October 31, 2021

접수일: 2021년 10월 14일, 수정완료일: 2021년 10월 25일

*Corresponding Author: justin@gnu.ac.kr

게재확정일: 2021년 10월 31일

Dept. of Accounting, Gyeongsang National Univ, Korea

I. 서론

2018년 기준 명목 GDP 1조 6,194억 달러로 세계 12위, 국민총소득(GNI)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40,450달러로 세계 33위. 한국이 경제 규모 측면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그러나 회계 및 감사환경의 측면에서 이러한 자료와는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국제경쟁력 평가 세부항목 중 ‘회계 및 감사의 적절성’ 순위는 대우건설과 모뉴엘의 회계부정이 발생한 2013년을 기점으로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회계 및 감사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회계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부응으로 20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8년 1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시행되었으며 2024 사업연도부터 모든 개정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외부감사법의 주요 내용은 법률의 목적 변경 및 외부감사 대상 확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하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 상장회사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고 감사인의 지정사유를 확대하고 감사인의 선임기한을 변경하였으며,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규율을 강화하였다. 또한 감사품질 강화를 위하여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표준 감사시간을 도입하였다. 뿐만아니라 회계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신설하고 회계부정과 관련한 제재를 강화하고 내부신고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회계부정 및 부실 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외부감사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금감원이 제시하는 유의사항을 살펴보고 특히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제도 시행 직후 기업의 회계 및 감사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감사인 지정제도와 선행연구

1. 감사인 지정제도의 변화

감사인 지정제도란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장예정 법인, 감리결과조치를 받은 법인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특정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 본질적으로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감사를 통해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외부적 감시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외부감사제도는 감사인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겠다.

1990년 감사인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지정의 범위와 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많은 변화가 이어져 왔다. 2014년 외부감사법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4조(감사인의 지정대상),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주권상장법인의 재무기준 산정 및 적용)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 제11조(지정 관련 재무사항의 제출)의 외부감사인 지정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지정사유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회계 및 감사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회계 개혁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8년 1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시행되었으며 2024 사업연도부터 모든 개정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감사인 지정은 주어진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강제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와 회사가 부정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목적으로 감사인 ‘자율지정신청’을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상장예정기업의 감사인 지정,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 관리종목 편입 등의 사유로 페널티성 성격을 지닌 감사인 지정 및 감사인 미선임 등 기술적 지정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또는 회계제도실)에 신청하게 되는데, 중도에 감사인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주기적 지정제로 인하여 지정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면 상장법인은 원칙적으로 6년 동안 자유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후 3년 동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6년 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러한 주기적 지정제는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주기적 지정제 시행 전이라도 직권 지정사유 즉, 재무제표 대리 작성 및 자문 요구 회사, 주채권 은행 또는 소액주주의 요청이 있는 회사, 직전 연도 감사투입시간이 표준 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회사, 그리고 상장법인 중 3개 사업연도 연속적자(영업손실, 부(-)의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최대주주(2회 이상) 또는 대표이사(3회 이상)의 교체가 빈번한 경우가 감사인 지정대상 사유로 추가된다.

이러한 감사인 지정제도의 변화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함이며, 구체적으로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의 개선과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함으로써 외부감사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권상장법인에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의 목적 변경을 통한 감사인 지정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하겠다.

2. 선행연구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감사인 지정제도가 감사품질, 감사보수, 시장 반응 등과의 관련성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감사법의 주요 개정 내용 중 감사품질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감사인 지정제도와 감사품질 간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는 개정된 외부감사법의 감사인 지정제도 개정 도입 효과에 대해 회사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분석결과 감사인 지정제도 개정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감사품질에 대해서 회계법인은 개정된 지정제도 첫 시행 연도인 2020년뿐만 아니라 직전 연도인 2019년

의 감사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회사의 경우는 감사품질이 과거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감사인과 피감사인간에 시각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 등급 하향신정제도에 대해서는 회사측이나 회계법인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지정제도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나 피감사인인 회사측은 반대 의견이 많아서 감사인 지정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3]은 자유수임제도 하에서 감사계약기간과 감사품질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는데, 감사품질의 전환점을 6년으로 설정한 경우 계속감사기간 6년 이하 구간에서 감사품질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며, 6년 초과 구간에서는 감사품질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역 U자형의 비선형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계속감사기간을 6년으로 제한한 주기적 지정제도가 지정회사의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4]는 과거 6년 이내에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없는 기업은 주기적 지정에서 제외하는 예외사항을 두는 것에 대해 테마감리는 해당 회계이슈에 대해서만 감리를 할 뿐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하지 않으므로 테마감리 대상 기업은 주기적 지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제도 시행목적에 더 부합하다고 하였다.

[1]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신지정감사와 구지정감사로 구분하여 각각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지정감사의 감사품질은 신지정감사의 경우에는 자유수임의 경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구지정감사의 경우는 감사품질에서 지정감사와 자유수임감사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정감사는 감사품질 향상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종감사인 지정감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속감사기간이 증가할수록 감사의 품질이 높았으며, 초도감사의 경우 초도감사가 아닌 경우보다 감사품질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계속감사기간이 길수록 회사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높은 감사품질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5]는 지정감사인의 감사품질과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정 사유

에 대해 구분하지 않은 전체 분석 결과 지정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과 감사품질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정 사유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감리조치’를 사유로 감사인이 지정된 경우 품질관리수준이 높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그렇지 않은 회계법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제한하는 감사인 등록제도의 시행이 감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6]은 감사인 지정여부에 따라 감사인 지정기업과 미지정기업간에 보수주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기업 중 11,092개의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감사인 지정기업은 감사인 미지정기업에 비해 보수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정감사인이 자유선임 감사인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견지함으로써 감사실패로 인한 소송위험에 대해 더욱 위험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감사인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정기간이 지정전기간과 지정후기간에 비해 보수주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인 지정후기간이 지정전기간에 비해 보수주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강화된 지정감사인의 위험회피 성향과 지정전기간에 잠재되어 있던 기업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지정기간에는 자본시장과 규제기관에 노출됨으로써 지정감사인이 자유선임 감사인에 비해 기업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 하였으며, 감사인 지정기간에 보수주의 정도를 높임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었고 감사인 지정제도의 정책효과가 감사인 지정기간 이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감사인 지정제도는 감사인에게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업에 잠재된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성향을 변경시키도록 동기부여하고, 감사인의 이러한 성향을 반영함으로써 감사인 지정기업의 보수주의 정도를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III. 외부감사대상과 감사인 지정 사유 확대

2017년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고 2018년 1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시행되었으며 2024 사업연도부터 모든 개정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개정 외부감사법의 주요 내용 중 확대 개정된 외부감사대상회사의 범위와 감사인 지정사유 확대에 따른 현황 변화를 분석하여 외부감사법 개정 의미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확대

개정된 외부감사법에서는 외부감사대상회사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되며, 이로 인해 법률 제명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외부감사법 제2조 제1호 및 제4조) 하였으며 [7],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를 정할 때 종전에 사용하던 자산·부채·종업원 수 기준 이외에 회사의 규모, 이해관계자, 재무상황 등과 관련성이 높은 매출액을 선정 기준에 추가하였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및 감사인 지정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발표하는데, 표 1.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표 1에 보인 바와 같이 ‘15년말 현재 24,951개사에서 ‘16년말 현재 27,114개사로 전년대비 2,163개사, 8.67% 증가하였고, ‘17년말 현재 29,263개사로 전년대비 2,149개사, 7.93% 증가하였으며, ‘18년말 현재 31,473개사로 전년대비 2,210개사, 7.55%, ‘19년말 현재 32,431개사로 전년대비 958개사, 3.04%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20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2,431개사로 전년대비 687개사 2.1% 감소하였다. 이는 ‘20년 신외부감사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소규모회사 등 외부감사제외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8]. 구체적으로 외부감사의 대상 회사와 제외대상회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외부감사대상 회사

외부감사의 대상회사는 주권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다만, 해당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표 1.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8],[9],[10],[11],[12]
 Table 1. Status of companies subject to external audit

(단위: 사, %)

구분	주권상장법인				비상장 법인	총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소계		
2020년 증감(율)	792	1,447	143	2,382	29,362	31,744
	2 (0.25)	62 (4.47)	-8 (-5.30)	56 (2.41)	-743 (2.48)	-668 (2.06)
2019년 증감(율)	790	1,385	151	2,326	30,105	32,431
	11 (1.41)	85 (6.54)	-	96 (4.30)	862 (2.95)	958 (3.04)
2018년 증감(율)	779	1,300	151	2,230	29,243	31,473
	14 (1.83)	52 (4.17)	-3 (-1.95)	63 (2.91)	2,147 (7.92)	2,210 (7.55)
2017년 증감(율)	765	1,248	154	2,167	27,096	29,263
	-2 (-0.26)	57 (4.79)	13 (9.22)	68 (3.24)	2,018 (8.07)	2,149 (7.93)
2016년 증감(율)	767	1,191	141	2,099	25,015	27,114
	7 (0.92)	50 (4.38)	33 (30.56)	90 (4.29)	2,073 (9.04)	2,163 (8.67)
2015년	760	1,141	108	2,009	22,942	24,951

<자료출처: 금감원 보도자료, <http://www.fss.or.kr>>

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
 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
 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
 아야 한다(외부감사법 제4조제①항, 시행령 제5조 제①
 항, 제②항) [7, 9].

표 2. 외부감사 대상 여부 기준, 표 2는 외부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요약한 것으로 유한회사의 경우
 는 외부감사법 시행일(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
 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매출액
 을 12개월로 환산하여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한다.

표 2. 외부감사 대상 여부 기준

Table 2. Criteria for subject to external audit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	120억 이상	자산	120억 이상
부채	70억 이상	부채	7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사원 수	50인 이상	
	상기 4개 요건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상기 5개 요건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대규모 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 대상			

2) 외부감사의 제외대상 회사

표 3 외부감사의 제외대상 회사, 표 3에 보인 바와
 같이 제시된 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
 부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외부감사법 제4조 제②항,
 시행령 제5조 제③항) [7, 9].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계속 중인 회사
 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 93조제1항에 따
 라 최대 만 2년간이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한다. 또한,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
 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중
 해당 사업연도 경과 후 합병소멸된 회사는 외부감사대
 상이다(예시: 12월 결산법인이 1월 중에 합병소멸된 경
 우 합병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전기말 재무제표에 대
 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표 3. 외부감사 제외대상 회사

Table 3. Companies Excluded from External Audit.

구분	외부감사의 제외대상회사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 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 172조에 따라 설립등 기를 한 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 의 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 조정투자회사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 문회사
6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 이 계속 중인 회사
7	해산·청산·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이 상 휴업 중인 회 사
8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9	금융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 저축은행
10	국제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회사
11	증권발행, 자금차입 목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 항제4호의 요건을 갖춘 회사
12	연락두절 등 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외부감사를 받도록 요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회사

이상의 외부감사 제외대상 회사 외에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으려는 회사는 감사인의 선임기한의 종료일부
 터 2주 이내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금감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
 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
 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10].

2. 감사인 지정사유 확대

1) 감사인 직권지정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직권 지정사유에 추가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연속으로 영업이익 또는 영업현금흐름이 0 미만 또는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선위가 인정한 회사, 과거 3년간 최대주주 변경 2회 이상 또는 대표이사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등이 감사인 지정 사유에 포함되었다(외부감사법 제11조 제①항, 시행령 제14조, 규정 제12조, 제13조) [7, 9].

표 4는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증권선물위원회는 표 4에 제시된 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표 4의 7번, 8번, 9번과 관련하여 3개 사업연도는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를 말한다(예시: '16년~'18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19년도에 '20년도 감사인을 지정한다). 15번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교체는 1인 대표가 수인 대표로 되는 경우, 수인 대표가 1인 대표로 되는 경우, 수인 대표 중 1인의 교체·사임·추가 등 일체의 변동을 말한다. 1번과 17번은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회사에 한해 적용되며(예시: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매년 9월 1일이 지정대상 선정일이 된다), 18번과 관련하여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간주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당초 지정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도 지정감사를 받고자 하는 회사는 금감원에 감사인 지정요청을 다시 해야 한다 [10].

표 4.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Table 4. Reason for designation of auditor ex officio

번호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	비고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2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3	외부감사법 제10조 ③항, ④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4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	

5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6	외부감사법 제5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받은 회사	신설
7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주권상장법인	신설
8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주권상장법인	신설
9	3개 사업연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주권상장법인	신설
1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신설
11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에 의한 직무제한에 해당하는 감사인 또는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12	감사시간이 외부감사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	신설
13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신설
14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대표이사의 변경이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신설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	
16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	
17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18	감사보수 미지급·미증액, 감사자료 미제출 또는 감사의견 관련 부당압력 등의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	신설
19	외부감사법상 특정사항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경고보다 높은 조치를 받은 회사	
20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이 요청된 회사	
21	소속 임직원이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공소제기된 주권상장법인	
22	지정기초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제한 회사	

2) 감사인 주기적 지정

개정 외부감사법에 의해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19.9.1.)을 기준으로 상장회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가 시행됨에 따라 '20년 회계연도부터 회계감사인 지정제도가 시작되었다. 기존의 외부감사법은 감사인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감사인의 선임을 회사에 맡기는 자유수임제였기 때문에 회사가 외부 회계감사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회계부정으로 부실감사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감사인의 독립성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외부감사법에서는 상장회사 및 소유 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해 연속하는 자유수입 6년 이후에는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외부감사법 제11조 제②, 제③항, 시행령 제15조, 규정 제15조 제⑦항) [7, 9].

(1) 감사인 주기적 지정대상

감사인 주기적 지정대상은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제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등이 연속해서 6개 사업연도를 자유수입 시 이후 3개 사업연도는 주기적 지정대상이 된다. 그러나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의 지분율 요건은 특수관계자가 개인·법인인지 불문하고 모두 합산하여야 하며,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 요건은 대표이사가 당해 회사의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의 요건으로는 첫째, 직전사업연도말 자산기준(개별 F/S)이 1천억원 이상. 둘째,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의 지분율(의결권 있는 주식)이 50% 이상. 셋째,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를 말한다.

(2) 감사인 주기적 지정기간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제외) 등이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연속 6개 사업연도 동안 자유수입한 경우 이후 3개 사업연도는 주기적 지정을 받는다. '20년 주기적 지정대상은 코스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일반적인 경우 '14년부터 '19년까지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이다. 그러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첫해인 '20년에는 주기적 지정대상회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서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220개 회사만 지정하고 자산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일부 회사는 다음연도로 지정이 연기되었다. 이렇게 지정이 연기된 회사부터 다음연도에 우선 지정한다.

(3) 감사인 주기적 지정시기

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시기는 금융감독원이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날 이전에 감사인 지정내역을 회사 및 감사인에 통보하며 지정통보일이 지정기준일이 되며 지정기준일로부터 4주 전에 지정감사인으로 예정된 회계법인을 문서로 회사 및 지정예정 회계법인에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예정내용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7조 제②항, 제⑥항) [9]. 구체적으로 지정사유별 지정대상 선정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회사 등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는 회사 및 관계기관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날이며, 감사인 미선임 회사의 경우는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이다. 감사인 부당교체 회사, 감사인 해임의무 위반 회사,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 지정기초 자료 미제출 부실제출 회사의 경우는 금융감독원이 지정사유 발생사실을 확인한 날이며, 이외 회사의 경우는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이다. 그림 1. 감사인 지정 흐름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20년 10월에 '21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사전통지하고 11월에 본 통지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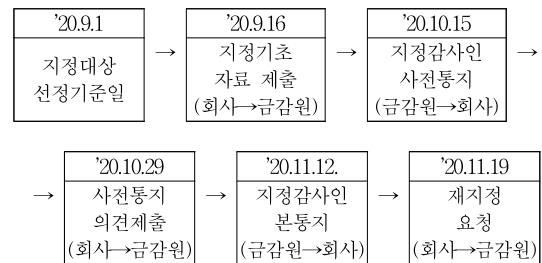


그림 1. 감사인 지정 흐름도
 Figure 1. Auditor Appointment Flowchart

(4) 감사인 주기적 재지정

표 5 감사인 주기적 재지정 요건, 표 5에 보인 바와 같이 감사인 주기적 재지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외부감사법 제11조 제④항, 제⑤항, 시행령 제17조 제③항, 제④항, 제⑦항, 제⑧항, 외감규정 제15조 제⑤항, 제⑥항) [7, 9]. 본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지정을 요청하려는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표 5. 감사인 주기적 재지정 요건

Table 5. Auditor Periodic Reassignment Requirements

번호	감사인 재지정 요건
1	해당 회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한 회사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2	지정감사인이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3	감사인이 당해 회사에 대한 직무제한 또는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 경우
4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집단보다 상위집단에 속한 회계법인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5	지배·종속회사간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6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회사가 법원이 선임허가한 감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7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법 또는 명령에 따라 해당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5)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표 6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요건, 표 6에 보인 바와 같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하거나,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는 당해 사업연도의 주기적 지정을 면제한다(외부감사법 제11조 제③항, 시행령 제15조 제⑤항, 제⑥항, 규정 제15조 제⑦항) [7, 9]. 따라서 표 6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는 지정기준일의 1년 전(12월 결산법인인 경우 '22사업연도 지정기준일('21.11.12)의 1년 전인 '20.11.12.)까지 감리 신청이 가능하다.

표 6.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요건

Table 6. Auditor Periodic Appointment Exemption Requirements

번호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요건
1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사의견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표명되지 않을 것
2	회사가 위 ①의 감사의견을 작성한 감사인을 지정기준일 이후 도래하는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않기로 하는 확인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것
3	지정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지 않을 것

(6) 감사인 지정 방법

감사인 지정 방법은 회사 군별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높은 회사부터 감사인 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한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

표 7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 구분 기준, 표 7에 보인

바와 같이 회사는 자산총액의 크기에 따라 크게 5개의 군으로 구분한다.

표 7.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 구분 기준(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14]

Table 7.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companies subject to auditor designation

구분	기준
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
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이고 5조원 미만인 기업
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4천억원 이상이고 1조원 미만인 기업
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4천억원 미만인 기업
마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기업

따라서 표 8 감사인 지정제 회계법인별 등급 기준, 표 8에서 보인 바와 같이 감사인도 회계법인의 주사무소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수, 감사업무 매출액, 품질관리 담당자 비중, 손해배상능력 및 전년도 감사대상 상장사수 등 특성을 고려하여 크게 5개의 군으로 구분한다 [10].

표 8. 감사인 지정제 회계법인별 등급 기준(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14]

Table 8. Rating standards by auditor-designated accounting firm

회계법인	구분기준				
	주사무소 등록회계사	감사부분 매출	품질관리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상장사 감사실적
가	600인 이상	500억원 이상	상장사 감사인에 요구되는 수준의 120%	200억원 이상	100사 이상
나	120인 이상	120억원 이상		60억원 이상	
다	60인 이상	4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0사 이상
라	30인 이상	15억원 이상	2명	10억원 이상	5사 이상
마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그 밖의 회계법인				

3) 감사인 지정 현황

감사인 지정회사 현황에 의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의 증감을 살펴보면, 표 9 감사인 지정 현황, 표 9에 보인 바와 같이 '14년에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른 지정사유 추가로 인하여 재무기준('15년 시행), 횡령배임 공시('15년 시행) 등 지정요건 신설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5년 중 공정한 감사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422개사였으나 '16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16년 시행)에 의한 지정사유 추가에 의해 514개사가 지정되었으며 전년대비 92개사, 21.80%(상장회사는 177개사, 12.74%) 증가하였고,

‘17년에는 546개사가 지정되어 전년대비 32개사, 6.23% (상장회사는 -7개사, -3.95%)증가, ‘18년에는 699개사가 지정되어 전년대비 153개사 28.02%(상장회사는 114개사, 67.06%)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200개사)가 정해진 ‘19년에는 1,224개사로 전년대비 525개사, 75.11% (상장회사는 523개사, 184.15%)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년에는 1,521개사가 지정되어 전년대비 297개사, 24.26%(상장회사는 253개사, 31.35%)가 증가되었다.

표 9. 감사인 지정회사 현황
 Table 9. Auditor Designated Company Status (단위: 사, %)

년도	구분	지정회사		증가율	외부감사 대상	외감대비	
		합계	전년대비 증감			지정비율	전년대비 증감
2016년	전체	514	92	21.80	27,144	1.90	0.20
	상장	177	20	12.74	2,099	8.43	0.62
2017년	전체	546	32	6.23	29,263	1.87	-0.03
	상장	170	-7	-3.95	2,167	7.84	-0.59
2018년	전체	699	153	28.02	31,473	2.22	0.36
	상장	284	114	67.06	2,230	12.74	4.89
2019년	전체	1,224	525	75.11	32,431	3.77	1.55
	상장	807	523	184.15	2,326	34.69	21.96
2020년	전체	1,521	297	24.26	31,744	4.79	1.02
	상장	1,060	253	31.35	2,382	44.50	9.81

자료: 금감원 보도자료, <http://www.fss.or.kr>

표 10 지정사유별 감사인 지정회사 현황, 표 11 지정사유별 감사인 지정회사 증감(율), 표 10과 표 11에 보인 바와 같이 지정사유별 지정회사는 ‘15년의 경우 상장예정법인이 193개사로 가장 많고, 감리결과 지정조치를 받는 회사 44개사, 관리종목 40개사, 감사인 미선임 38개사, 순이며 ‘15년에 신설된 감사인지정사유인, 재무기준요건 해당(부채비율 과다 등)으로 78개사, 횡령배임 공시 등으로 1개의 회사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11].

‘16년의 경우는 상장예정법인이 174개사로 가장 많고, 감사인 미선임 96개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71개사, 재무기준(부채비율과다) 요건 해당 66개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정대상회사의 증가 원인은 감사인지정요건 신설규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에 의한 71개사 증가 및 감사인미선임 회사 58개사로 전년(38개사)대비 58개사(152.6%)의 증가에 기인하였다 [11].

‘17년의 경우는 상장예정법인이 172개사, 감사인 미선임 130개사, 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지정요건 72개사, 감리결과조치 67개사, 내부회계관리제도미비 59개사 등의 순으로, 지정대상회사 증가원인은 감사인미선

임 130개사로 전년(96개사)대비 34개사(35.4%)의 증가와 회사의 감리결과지정조치를 받은 회사 65개사로 전년(51개사) 대비 14개사,(27.5%) 증가에 기인하였다[9].

‘17년의 경우는 상장예정법인이 172개사, 감사인 미선임 130개사, 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지정요건 72개사, 감리결과조치 67개사, 내부회계관리제도미비 59개사 등의 순으로, 지정대상회사 증가원인은 감사인미선임 130개사로 전년(96개사)대비 34개사(35.4%)의 증가와 회사의 감리결과지정조치를 받은 회사 65개사로 전년(51개사) 대비 14개사,(27.5%) 증가에 기인하였다 [12].

‘18년에는 상장예정법인 217개사, 감리결과조치 146개사, 감사인미선임 109개사, 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지정요건 80개사, 내부회계관리제도미비 7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지정대상회사의 증가는 감리결과 지정조치를 받는 회사가 전년(65개사) 대비 81개사(124.6%)가 증가하였으며, 상장예정법인 지정신청이 전년(172개사) 대비 45개사가(26.2%) 증가하였다 [13].

‘19년에는 상장예정법인 331개사, 주기적지정 220개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또는 3개 사업연도 연속 부의영업현금흐름 또는 3개 사업연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회사 197개사, 관리종목 112개사, 부채비율 과다 108개사, 감사인미선임 66개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정회사 수가 이처럼 크게 증가한 사유는 개정 외부감사법의 신규 지정기준에 따라 475개사(주기적지정 220개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197개사,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55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상장예정법인 간주지정제도 폐지에 따라 331개사가 지정되어 전년(217개사) 대비 114개사(952.5%) 증가, 관리종목 편입상장사 증가에 따라 112개사가 지정되어 전년(22개사) 대비 90개사(409.1%)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감사인 선임기한의 탄력적집행(선임제도의 큰 변화를 감안하여 자율선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일괄적인 감사인 지정보다 일정기간 계도를 우선)에 따라 감사인 미선임 회사는 66개사로 전년(109개사) 대비 43개사(39.5%)가 감소하였다 [8].

‘20년에는 주기적 지정은 462개사(상장회사 434개사(‘19년 주기적 지정 220개사 중 금년 직권지정 사유발생 등의 변동은 반영한 214개사의 계속지정과 신규지정 220개사, 비상장회사 28개사)로 전년(220개사) 대비 110%가 증가하였으며, 직권지정은 상장예정법인이 362개사로

표 10. 지정사유별 감사인 지정회사 현황

Table 10. Auditor Designated Companies by Reason for Designation

지정사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주기적 지정	0	0	0	0	220	462
상장예정법인	193	174	172	217	331	362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0	0	0	0	197	245
관리종목	40	33	27	22	112	133
부채비율 과다	78	66	72	80	108	64
감사인 미선임	38	96	130	109	66	22
감리조치	44	51	65	146	64	55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0	0	0	0	55	75
선임절차 위반	0	0	0	4	26	30
회사요청	1	4	1	1	14	35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0	0	2	31	10	8
횡령, 배임 발생	1	10	5	11	8	14
내부회계관리 제도 미비	0	71	59	71	0	0
기타	27	9	13	7	13	16
지정회사 합계	422	514	546	699	1224	1,521
증감		92	32	153	525	297
증감율		21.80	6.23	28.02	75.11	24.26

자료: 금감원 보도자료, <http://www.fss.or.kr>

표 11. 지정사유별 감사인 지정회사 증감(율)

Table 11. Change rate of auditor-designated company by reason for designation

지정사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	증감율	증감	증감율	증감	증감율	증감	증감율	증감	증감율
주기적 지정	0	-	0	-	0	-	220	-	242	110.0
상장예정법인	-19	-9.8	-2	-1.2	45	26.2	114	52.5	31	9.4
3년연속 영업손실	0	-	0	-	0	-	197	-	48	24.4
관리종목	-7	-17.5	-6	-18.2	-5	-18.5	90	409.1	21	18.8
부채비율 과다	-12	-15.4	6	9.1	8	11.1	28	35.0	-44	-40.7
감사인 미선임	58	152.63	34	35.4	-21	-16.2	-43	-39.5	-44	-66.7
감리조치	7	15.9	14	27.5	81	124.6	-82	-56.2	-9	-14.1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0	-	0	-	0	-	55	-	20	36.4
선임절차 위반	0	-	0	-	4	-	26	500.0	4	15.4
회사요청	3	300.0	-3	-75.0	0	-	13	1300.0	21	150.0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0	-	2	-	29	1450.0	-21	-67.7	-2	-20.0
횡령, 배임 발생	9	900.0	-5	-50.0	6	120.0	-3	-27.3	6	75.0
내부회계 관리제도 미비	71	-	-12	-16.9	12	20.3	-71	-100.0	0	-
기타	-18	-66.7	4	44.4	-4	-30.8	4	57.1	3	23.1

자료: 금감원 보도자료, <http://www.fss.or.kr>

가장 많고,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245개사, 관리종목 133개사,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등의 순으로 지정되었다 [14].

표 12 회계법인별 감사인 지정 현황, 표 12에 보인 바와 같이 '16년에는 삼일(112개사), 삼정(63개사), 안진(54개사), 한영(34개사)순으로 4대회계법인에 지정한 회사는 263개사(51.2%)로 전년 (255개사, 60.4%) 대비 8개사가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9.2%p 감소하였다 [11].

'17년도에는 삼일(108사), 삼정(83사), 한영(42사)순으로 4대 회계법인에 지정한 회사는 233사(42.7%)로 전년 (263사, 51.2%) 대비 30개사가 감소하였으며, 비중도 8.5%p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금융위원회의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에 따라 동 법인에 '17사업연도에 대한 지정을 하지 않아 4대 회계법인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12].

'18년도에는 삼일(136사), 삼정(104사), 한영(59사), 안진(43사)순으로 4대회계법인에 지정한 회사는 342개사(48.9%)로 전년(233사, 42.7%) 대비 109사가 증가하였으며 비중도 6.2%p 증가하였다. 이는 금융위원회('17년 4월)의 업무정지 조치에 따라 '17사업연도에 대한 지정을 하지 않았던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18사업연도 지정을 재개하면서 지정회사수(43사)와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3].

'19년도에는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 4대회계법인이 속한 가군은 454사(37.1%)로 전년(342사, 48.9%) 대비 112사 증가하였지만 그 비중은 11.8%p 감소하였으며, 그 이유는 '19년 10월부터 지정감사인 보다 하향의 지정군으로 재지정 요청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8].

표 12. 회계법인별 감사인 지정 현황

Table 12. Auditor designation by accounting firm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	
		증감	증감율	증감	증감율	증감	증감율	증감	증감율	증감	증감율	증감	증감율
4대 회계법인	삼일	가군	가군	136	19.5	108	19.8	112	21.8	92	21.8	-	-
				28(-0.3)	-4(-2.0)	20(-)	-	-	-	-			
	삼정	104	14.9	83	15.2	63	12.3	67	15.9	-	-	-	
		21(-0.3)	20(2.9)	-4(-3.6)	-	-	-	-					
	한영	59	8.4	42	7.7	34	6.6	37	8.8	-	-	-	
17(0.7)		8(1.1)	-3(-2.2)	-	-	-	-						
안진	43	6.2	-	-	54	10.5	59	14.0	-	-	-		
	43(6.2)	-54(-10.5)	-5(-3.5)	-	-	-	-						
소계	526	34.6	454	37.1	342	48.9	233	42.7	263	51.2	255	60.4	
	72(-2.5)	112(32.7)	109(6.2)	-30(-8.5)	8(-9.2)	-	-						
기타	995	65.4	770	62.9	357	51.1	313	57.3	251	48.8	167	39.6	
	225(2.5)	413(115.7)	44(-6.2)	62(8.5)	84(9.3)	-	-						
합계	1,521	100	1,224	100	699	100	546	100	514	100	422	100	
	297	525	153	32	92	-	-						

*아래 란: 증감수(전년대비 증감비율)

자료: 금감원 보도자료, <http://www.fss.or.kr>

‘20년도에는 4대회계법인이 속한 가군은 526개사(34.6%)로 전년 대비 72사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2.5%p 감소하였다 [14].

IV. 결 론

2001년 엔론사 등의 대형 분식회계를 계기로 제정된 미국의 회계개혁법(상장사 회계개선 및 투자자 보호법)으로 EU, 일본 등 각국의 회계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우리나라도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수년간 논의를 거듭하였으며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감사인의 낮은 독립성,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의 부족, 회계부정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 등 회계부정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7 회계 개혁」으로 한국판 「삭스법 SOX: Sarbanes Oxley Act」으로 불리는 「회계개혁 선진화 3법」이 외부감사법 전면개정과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이 2017년 9월 28일 국회에 통과하여 2017년 10월 31일 공포되었으며, 2018년 1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시행되었으며 2024 사업연도부터 모든 개정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인 지정제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는 등 기업회계와 외부감사의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조정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감사인 선임 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외부감사대상회사는 ‘15년말 현재 24,951개사에서 ‘16년말 현재 27,114개사로 전년대비 8.67% 증가하였고, ‘17년말 현재 29,263개사로 전년대비 7.93% 증가하였으며, ‘18년말 현재 31,473개사로 전년대비 7.55% 증가하여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19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2,431개사로 전년대비 958개사, 3.04% 증가하였으며 유동화전문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 대상 확대로 과거 3년 평균(8.05%)에 비해 증가율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2,431개사로 전년대비 687개사 2.1% 감소하였다. 이는 ‘20년 신외부감사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소규모회사 등 외부감사제외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라 ‘18년에는 699개사가 지정되어 전년대비 153개사 67.06%(상장회사는 114개사, 67.06%) 증가하였으며,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가 정해진 ‘19년에는 1,224개사로 전년대비 525개사, 75.11% (상장회사는 523개사, 184.15%)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년에는 1,521개사가 지정되어 전년대비 297개사, 24.26%(상장회사는 253개사, 31.35%)가 증가되었다.

감사인 지정 사유는 ‘19년에는 상장예정법인 331개사, 주기적지정 220개사, 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3개 사업연도 연속 부의영업현금흐름 또는 3개 사업연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회사 197개사, 관리종목 112개사, 부채비율 과다 108개사, 감사인미선임 66개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정회사 수가 증가한 사유는 신외부감사법의 신규 지정기준에 따라 475개사가 증가 하였으며 상장예정법인 간주지정제도 폐지에 따라 114개사 증가, 관리종목 편입상장사 증가에 따라 90개사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20년에는 주기적 지정은 462개사로 (상장회사 434개사, 비상장회사 28개사) 전년(220개사)대비 (242개사, 110%)가 증가하였으며, 직권지정은 상장예정법인이 362개사로 가장 많고, 3년연속 영업손실등 245개사, 관리종목 133개사,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등의 순으로 지정되었다.

회계법인별 감사인 지정은 ‘19년도에는 삼일, 삼정, 한영, 안진등 4대회계법인이 속한 가군은 454사(37.1%)로 전년 (342사, 48.9%) 대비 112사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은 11.8%p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19년 10월부터 지정감사인 보다 하향의 지정군으로 재지정 요청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20년도에는 4대회계법인이 속한 가군은 526개사(34.6%)로 전년 대비 72사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2.5%p 감소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상장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 기관들과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우수한 지배구조 등 회계처리 수준이 양호한 기업을 선별하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합리한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대형-중소 회계법인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배주주 견제 등을 위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을 설정하고, 과도한 감사보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사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였다. 뿐만아니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등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등록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하되, 평가상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였으며 업종·기업규모 등에 따른 기업 그룹별 최소 감사투입시간을 규율하는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실증분석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의 유용성을 살펴보거나 감사인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면 본 연구는 2018년 1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의한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제도 시행 직후 기업의 회계 및 감사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유의사항은 무엇 인지를 살펴보았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외부감사법을 시행한 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있다. 향후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이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향상되어 감사인 지정을 받기 이전 기간에 비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증대했는지, 감사인 지정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실증연구가 진행되어 개정 외부감사법의 실효성을 살펴봄으로써 외부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기관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Ki-Tae Park,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Rule Chang in Mandatory Auditor Designation*, Doctoral thesis,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2017.
- [2] Seung-Hun Yeom, Jong-Il Kim, "The Effect of Implementation of the Designation System for Auditors of the Revised External Audit Law: Focus on Companies that applied the Downward Grade Application System for External Auditors," *Korea Accounting Journal*, Vol. 29, No. 5, pp. 191-234. Oct. 2020. <http://dx.doi.org/10.24056/KAJ.2020.09.002>
- [3] Minwoo Lee, Ki Wi Chung, "The Effect of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on Audit Quality Improvement: Focused on auditor independence," *Accounting, Taxation and Auditing Research*, Vol. 61, No. 4, pp. 123-166, 2019. http://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544315.
- [4] Sung-Ho Choi, Kyoung-Ran Park, "A Study on Improvement of Mandatory Auditor Designation Regulation," *Korea Business Review*, Vol. 23, No. 2, pp. 149-170, May, 2019.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ld=NODE08511571>.
- [5] Youngsoon Cheon, Moonchul Kim, Mun Ho Hwang, "The Relation Between Audit Quality of Designated Auditor and Quality Control Strength," *Accounting, Taxation and Auditing Research*, Vol. 57, No. 3, pp. 1-44, 2015. 10.22781/kicpa.2015.57.3.343
- [6] Soongun Ha, Yong Eon Cho, Sungwhan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or Designation and Conservatism," *Journal of Accounting*, Vol. 24, No. 2, pp.117-151.
- [7]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2020.05.19.
- [8] https://www.fss.or.kr/fss/kr/promo/bodobbs_list.jsp?page=106 2020.01.22.
- [9]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http://law.go.kr>, 2021.01.12.
- [10] Regulations on external audit and accounting, <http://law.go.kr>, 2020.11.04.
- [11] https://www.fss.or.kr/fss/kr/promo/bodobbs_list.jsp?page=342 2017.01.25.
- [12] https://www.fss.or.kr/fss/kr/promo/bodobbs_list.jsp?page=265 2018.01.25.
- [13] https://www.fss.or.kr/fss/kr/promo/bodobbs_list.jsp?page=179 2019.01.23.
- [14] https://www.fss.or.kr/fss/kr/promo/bodobbs_list.jsp?page=46, 2021.01.26.

※ 이 논문은 2020년, 2021년 경상국립대학교 대학회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